

모델 07

DDP (관세지급인도) 조건 활용 모델 (한-미 FTA)

01 | 개요

- DDP조건을 사용하여 수출자가 계약단가를 높임과 동시에 FTA를 활용하여 수입관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모델

Delivered Duty Paid (관세지급 인도조건) 수출자가 수입국 지정목적지에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까지 위험비용을 부담 (수입관세까지 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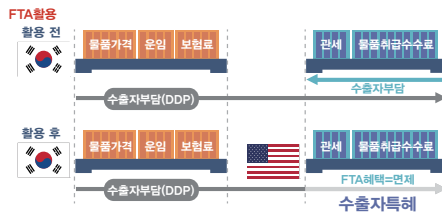
02 | 비즈니스 모델

- DDP 조건은 수출자가 운임, 보험료 뿐만 아니라 수입관세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어 계약단가가 더 오르는 것이 일반적



- 무역거래조건을 CIF에서 DDP로 변경할 경우, 수출자가 관세 및 물품 취급수수료까지 모두 부담하므로 계약단가는 높아지나, FTA 특혜세율 0%를 적용하면, 수입관세 부담이 없어지므로 수출자에게는 계약단가는 높아지면서 실제적인 부담은 낮아지는 혜택이 발생하게 됨
 - 수입자는 DDP 조건으로 편리하게 수입하고, 수출자는 추가적인 수입 관세 부담없이 거래단가를 높일 수 있음

FTA DDP(관세지급인도) 조건 활용 모델



03 | 활용 및 확산분야

- 모든 산업 분야
- 특히, 미국 수출기업 중 지사가 미국에 있는 기업에 매우 유용